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71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신정훈·염태영·정동영

조은희 • 이기헌 • 박희승

이정문 • 한정애 • 김현정

양부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 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제13호가목"을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개별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시장등의 상인
 -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 14.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13호에 따른 개별가맹점
 -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

(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1항 중 "촉진을"을 "촉진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를"으로 한다.

제26조의4제1항 중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을 "상인, 상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인 및 상인조직은"을 "상인, 상인조직 및 생산자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을 "상인, 상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는"으로 한다. 제26조의6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생산자단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가맹점"을 "가맹점(생산자단체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	12
지자가 <u>제13호가목</u> 에 따른 개	<u> </u>
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	
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	
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	
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	
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13. "개별가맹점"이란 온누리상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목의 자를 말한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공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	의 자를 말한다.
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	가. 시장등의 상인
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	감소지역"이라 한다) 내에
	1

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 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 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신 설>

<신 설>

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 단체"라 한다)

14.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13호에 따른 개별가맹 점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 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 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 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5조의2(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 의 설치 ·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 등의 판매 <u>촉진을</u>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 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u>상</u> 인 또는 <u>상인조직은</u> 중소벤처 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 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Φ
<u>촉진 및 인구감소지</u>
역의 경제활성화를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상
으 인, 상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
는
<u>.</u>
②
<u>상인, 상인조직 및 생산자단체</u>
<u>가</u>
 _
.

(3)	\sim	(5)	(생	략)
(U)		(0)	('')	-1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u>상인 또</u> 는 <u>상인조직은</u>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 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 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생략)
-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3. (생략)
- ② · ③ (생 략)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상인, 상</u>
인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경우(생</u>
산자단체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 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2. 3. (생략)
- ⑤ · ⑥ (생 략)

- 1. <u>가맹점</u>이 소속 시장등의 구 1. <u>가맹점(생산자단체는 제외한</u> 다)-----
 - 2. 3. (현행과 같음)
 - ⑤ · ⑥ (현행과 같음)